

4 축사육시설 적정 사육기준 및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

농림부는 지난달 축산법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과 축산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을 고시했다.

다음은 고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. - 편집자 주 -

1.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

가. 한·육우

□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

(단위: m²)

사육방식	번식우	비육우	송아지
방사식	10.0	7.0	2.5
계류식	5.0	5.0	2.5

<두수산정방법>

- 육성우는 성우로 환산하여 계산: 성우 1두 = 육성우 2두
- 송아지두수는 별도로 계산

송아지는 6개월령 미만으로 번식우(어미소)와 함께 사육하지 않는 두수이며, 포유중인 송아지는 송아지두수에서 제외

구분	송아지	육성우	성우
성장단계	6개월령 미만	6~14개월령 미만	14개월령 이상



나. 젖 소

□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

(단위: m²)

시설형태	경산우		초임우 (13~24월령)	육성우 (7~12월령)	송아지 (3~6월령)
	착유우	건유우			
깔짚	16.5 m ²	13.5	10.8	6.4	4.3
계류	8.4	8.4	8.4	6.4	4.3
후리스틀	8.3	8.3	8.3	6.4	4.3

□ 일관사육시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

(단위: m²)

시설형태	깔짚	계류 ¹⁾	후리스틀 ²⁾
두당평균면적	12.8	8.6	9.0

- * 1) 계류식: 착유·건유우사는 계류우사, 나머지는 깔짚우사인 경우 포함
- 2) 후리스틀: 착유우사는 후리스틀, 나머지는 깔짚우사인 경우 포함
- 3) 총두수는 포유중인 송아지를 제외한 전두수를 기준으로 함

○ 성장단계별 또는 일관사육시 기준 중 택일하여 적용

다. 돼지

□ 성장단계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

(단위: m²)

구분	총 돈	번 식 돈				비 육		
		임산돈	분만돈	중부대기돈	후포돈	자돈	육성돈	비육돈
두당 소요면적	9.7	1.4	3.9	1.4(스틀) 3.1(군사)	3.1(군사)	0.3	0.6	0.9

* 포유중인 자돈은 사육두수에 포함하지 않음

□ 경영형태별 두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

(단위: m²)

일관경영	번식경영(1)	번식경영(2)	비육경영(1)	비육경영(2)
두0.89	2.5	0.9	0.7	0.87

- * 양돈업 경영형태 유형
- ① 일관경영: 번식 - 분만 - 자돈 - 비육
- ② 번식경영(1): 번식 - 분만
- ③ 번식경영(2): 번식 - 분만 - 자돈
- ④ 비육경영(1): 자돈 - 비육
- ⑤ 비육경영(2): 비육
- * 총두수는 포유자돈을 제외한 전두수를 기준으로 함

○ 성장단계별 또는 경영형태별 기준 중 택일하여 계산

라. 닭

□ 수당 가족사육시설 소요면적

산란계	케이지	0.042㎡/수	
	평사	0.11㎡/수	
산란 육성계	케이지	0.025㎡/수	100일령까지 사육
육 계	케이지	0.042㎡/수	
	평사	무 창	0.046㎡/수
		개 방	0.066㎡/수

* 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적용

〈수수산정방법〉

-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: 성계 1수=육성계 2수=병아리 4수

육계	3주령 미만	3~4주령 미만	4주령 이상
산란계·종계	3주령 미만	3~18주령 미만	18주령 이상

2. 가족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

가. 짐승(2종): 오소리, 뉴트리아

나. 가금(2종): 타조, 꿩

다. 관상용 조류(15종): 십자매, 금화조, 문조, 호금조, 금정조, 소문조, 남양청홍조, 붉은머리청홍조, 카나리아, 앵무, 비둘기, 금계, 은계, 백한, 공작

라. 기타(1종): 지렁이 ㉔